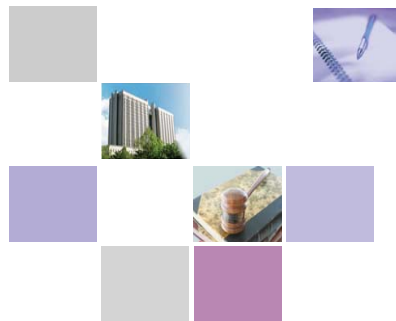


형사 항소심

안내서

형사 항소심 안내서



▶▶ slgodung.scourt.go.kr



서울고등법원 안내

서울고등법원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강원도에 위치한 지방법원 및 지원의 합의부가 1심 법원으로서 판결하거나 결정한 사건 등을 항소심 또는 항고심으로서 판단하는 법원이므로, 사건의 양이나 중요도 면에서 전국 법원 중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의 모든 구성원은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각종 분쟁과 갈등을 법정에서 정의롭게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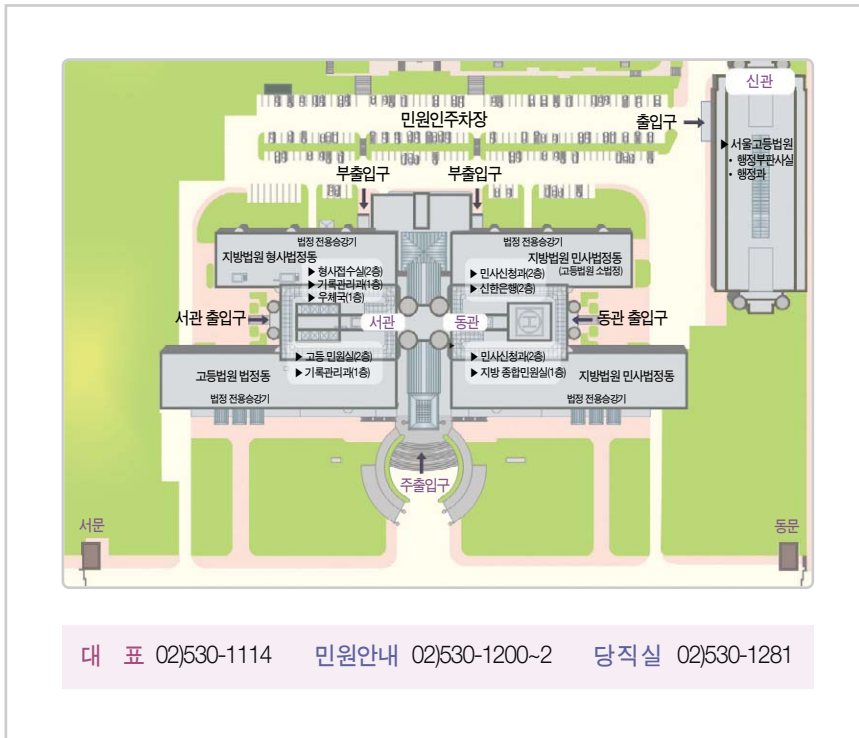
그런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려면 재판절차를 잘 이해하고 재판부가 실제적 진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는 당사자의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법원은 이러한 당사자의 노력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한편,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좀 더 쉽게 재판절차를 이해하고 법원과 소통할 수 있도록 민사, 형사, 행정의 분야별로 항소심 재판에 대한 안내서를 마련 하였습니다.

이 안내서가 항소심 재판의 이해를 돕는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2. 7. 1.

서울고등법원장 김 진 권



항소심 절차 안내

01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은 1심 재판과 어떠한 점이 다른가요

항소심 재판은 기본적으로 1심 재판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1심 재판과 다른 점이 많습니다. 1심 법원은 검사가 주장하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지, 유죄로 인정된다면 적절한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를 위주로 판단합니다. 검사와 피고인은 1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항소를 할 수 있는데, 항소법원은 항소인(검사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 즉 항소이유가 타당한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초로 열리는 1심 재판에서는 사실심리와 증거조사가 폭넓게 이루어지는 반면, 항소심 재판에서는 새로운 증거 신청이나 사실조사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다만 항소심에서도 공개된 법정에서 재판이 열리고,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이 인정되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점 등은 1심 재판과 같습니다.

02

항소를 제기한 다음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항소이유서에는 무엇을 적어서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항소이유서는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검사나 피고인이 1심 판결에 항소를 한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말합니다. 항소심 재판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항소이유서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항소인은 항소법원에서 소송기록을 접수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면 판결 없이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됩니다.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항소이유서에 기재합니다.

- 사실오인 : 1심 법원이 잘못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 법리오해 : 1심 법원이 법리를 잘못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 심신장애 : 사건 당시 정신장애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선고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 양형부당 : 피고인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03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는 방법과 상고를 제기할 때에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고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기재된 상고장을 제출해야 하며, 상고장은 판결을 선고한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고의 제기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판결 선고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이내입니다. 상고제기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고장을 제출하면 상고기각결정을 받게 되므로 상고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상고를 제기할 때에는 상고장만 제출하여도 됩니다. 상고가 된 후에 대법원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상고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없이 결정으로 상고가 기각되므로,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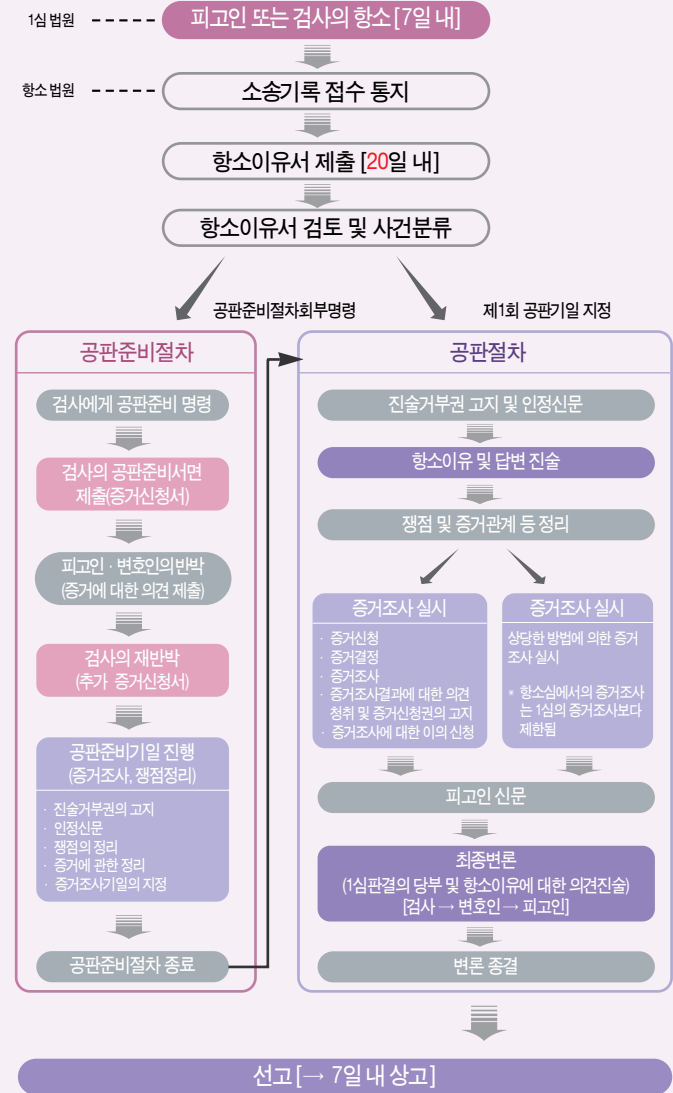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 보석청구 등 형사재판과 관련된 신청을 하고 싶는데 신청서를 어떠한 방식으로 작성해야 할지 모릅니다. 신청서를 간단하고 쉽게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피고인, 피해자 등이 형사소송절차에서 신청을 할 경우 작성해야 할 신청서 양식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았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화면 상단의 “전자민원센터”를 클릭한 뒤에 “양식모음” 화면에서 필요한 서식을 검색하거나 “형사” 부분을 클릭하면 형사소송절차에서 사용되는 서식들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식에 사건번호와 신청인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뒤에 서울고등법원 종합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양식들은 서울고등법원 종합민원실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형사 항소심 소송 절차 흐름도]



피고인의 권리에 관한 사항

05

피고인이나 그 가족은 재판 중인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나요

피고인은 소송관련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성명, 주소 등에 대해서는 열람·복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은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위임장 원본이 필요하므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다면 구치소 등을 방문하여 직접 위임장을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06

항소심에서도 새로운 증거를 신청할 수 있나요

항소심 재판은 원칙적으로 이미 선고된 1심 재판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재판이고, 항소법원은 1심 재판에서 이미 제출된 증거를 모두 검토하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에서는 1심 재판에 비하여 새로운 증거신청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5는 항소심에서 새로이 증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① 1심 재판에서 증인신청을 하지 않는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증인신문으로 인해 소송을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
- ② 1심에서 이미 신문한 증인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부득이 다시 신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③ 항소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07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나요

항소심 재판에서도 1심 재판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가벼운 형을 선고받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을 경우 합의서를, 피해자를 위하여 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공탁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과 피고인의 성장 과정, 가족 관계, 부양 가족의 유무, 경제적 상태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피고인의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들을 검토하여 피고인에게 적절한 형을 정하게 되므로, 피고인이 유리한 형을 선고받는 데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항소심 변론종결일 까지 적극적으로 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08

항소심 재판에서도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항소심 재판에서도 1심 재판과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의 형사사건은 구속사건이나 중죄사건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신청이 없어도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은 피고인은 재판부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재판부의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에 의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심 국선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작성과 제출, 공판기일에서의 변론, 상고 여부에 대한 조언 등으로 피고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09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 납부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이며, 항소심 재판에서도 1심 재판과 마찬가지로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석의 청구는 피고인이 직접 할 수 있고,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법정대리인, 변호인 등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종류, 전과 유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주거의 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보석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석결정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지정된 조건에 위반한 경우에는 보석이 취소되어 다시 구금되고 보석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10

형사재판을 받다가 무죄판결이 선고될 경우에 억울하게 수사와 재판을 받은 사람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무죄판결 공시제도는 피고인에게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결을 일간신문에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무죄판결 공시제도는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므로, 재판부가 무죄판결을 선고할 때에 무죄공시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무죄공시를 원한다고 말할 경우 재판부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무죄공시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무죄공시를 원한다는 것을 별도의 서면에 적어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죄공시가 선고되면 해당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뒤에 사건번호, 당사자 성명, 무죄판결의 취지를 일간신문의 광고란에 1회 게재하며, 그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국가가 부담합니다.

11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이 억울하게 구속된 것에 대한 보상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나요

형사재판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은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 절차,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어야 하며,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을 때까지 미결구금을 당하였거나 형의 집행을 받았을 것을 필요로 합니다.

형사보상청구는 확정된 무죄판결을 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고등법원에 형사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죄의 판결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구금된 일수에 따라 법령이 정한 기준과 청구인이 당한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합니다.

12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이 국가에 대하여 변호사 선임료 등 재판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구금 또는 형의 집행으로 인한 보상 이외에 국가에 대하여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죄판결이 확정되어야 하며,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이 지출한 모든 소송비용에 대하여 보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지출된 여

비, 일당, 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정됩니다.

다만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등에는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상금액은 법원이 형사 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합니다.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13

범죄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들이 소송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나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및 그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변호사 등도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지만 반드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판장은 사안에 따라 이를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않을 수 있고, 소송기록 일부에 대해서만 열람·복사를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사를 허가하는 경우 사용목적에 제한하거나 적당한 조건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14

범죄의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에 출석하여 증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항소심 재판에서도 피해자가 진술을 할 수 있나요

범죄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법원에 증인으로 진술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항소심 재판에서도 피해자 진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

범죄의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가해자로부터 간편하게 피해를 변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제도 또는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할 경우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제도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배상액 등에 관한 합의를 할 경우 합의내용을 형사사건 공판조서에 기록하면 민사소송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절차에서 화해가 성립되어 가해자가 합의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배상을 할 경우 피해자가 간편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1심 또는 항소심 법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고 합의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제도는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배상명령은 모든 범죄의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등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정한 범죄의 피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신청은 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1심에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항소심 재판에서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의 절차비용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신청서에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될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민사판결과 같은 집행력이 인정되므로, 가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16

범죄 피해자로서 법원으로부터 소환을 받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법원에 출석하거나 증언을 하는 동안 피고인 또는 그 가족들과 만나는 것을 방지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피해자가 사전에 해당 법원에 연락을 하면 법원의 담당 직원이 피해자가 법원에 출석하는 당일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만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별도의 출입구로 증인을 안내하며 증언이 끝난 뒤에는 법원청사 입구까지 안내하게 됩니다.

증인으로 출석하는 피해자는 해당 재판부에 ① 화상증언(법정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비디오 중계장치로 진술하는 제도), ② 비공개신문(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재판심리를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아니하는 제도), ③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피해자가 증인으로 진술할 때에 신뢰관계 있는자와 같이 앉을 수 있는 제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2012년 2월부터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재판절차에서 증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지 않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증인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기타 사항 (상소권회복 · 재심)

17

불가피한 사유로 상소를 제기하지 못하여 상소제기기간이 경과하였는데, 다시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상소권회복은 형사소송법상 상소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한 상소권을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회복시키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모든 경우에 상소권회복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상소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만 상소권회복 결정을 합니다. 상소권회복청구는 사유가 끝난 날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항소·상고는 7일, 즉시항고는 3일)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원인이 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상소권회복청구자가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상급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판을 진행하여 무죄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심은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규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심은 검사, 피고인이었던 사람,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변호인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심의 청구가 ① 법률상 방식에 위반되거나 청구권 소멸 후에 제기된 경우 및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각결정을 하고, ②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한 후 사건에 대하여 다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형사재판 관련 용어

● 피고인

- 검사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할 자로 공소제기된 자
- 피고인은 단순히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무죄를 주장하여 적극적으로 다툼 지위와 권한이 있음
-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에 관하여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유리한 사실에 관하여는 적극적으로 진술할 권리가 있음

● 변호인

-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고인을 위한 법률상, 사실상 주장을 하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을 방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변호사
- 피고인이 선임하는 사선변호인과 국가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선정하는 국선변호인이 있음

● 국선변호인

- 법원에서 피고인을 변호하기 위하여 선정한 변호인으로 국가에서 변호료를 지급함
- 헌법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피고인에게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함
- 피고인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음

● 검사

- 범죄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법원에 기소하는 국가 기관
- 검사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하고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음

● 재판부

- 1명의 재판장과 2명의 배석판사로 구성됨
- 재판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재판을 주재하고 법정질서 유지를 위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함

● 피해자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상 손해를 받게 된 자
- 형사소송법은 형사재판에 관한 피해자의 이익과 절차보장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①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권리, ② 법원에서 증언을 할 때에 심리가 공개되지 않도록 신청하거나 신뢰관계에 있는 자와 동석할 수 있는 권리, ③ 소송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음

● 기소

- 검사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사람을 재판에 회부하는 것
- 검사는 기소를 위하여 피고인의 인적 사항, 범행 내용, 적용할 법률 등을 기재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함

● 공판절차

- 재판장이 정한 날짜에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심리 및 재판절차
-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이 주장을 말하고 그에 관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짐

● 심리

-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원이 주장이나 증거 등을 심사하는 행위

● 무죄추정의 원칙

-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아무런 죄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원칙

● 입증책임

- 주장사실에 대하여 증거를 통하여 증명하여야 하는 책임으로서,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유죄라는 점을 검사가 증명할 책임을 부담함
- 검사가 피고인이 유죄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되어야 함

● 항소

-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서 받은 1심 판결에 대하여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당사자가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합의부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
- 항소기간은 7일 이내이며 항소기간이 지날 경우 1심 판결이 확정됨

● 상고

-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당사자가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대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
- 상고기간은 7일이며 상고기간이 지날 경우 항소심 판결이 확정됨

● 증거

- 법원이 재판을 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을 조사하고 판단하기 위한 자료
-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할 책임을 지고 있으나, 피고인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음

● 법정대리인

-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자
- 법정대리인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보석을 청구할 권리,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복사할 권리, 항소·상고를 할 권리 등을 가지고 있음

● 보석 제도

- 법원이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주거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
- 구속된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이 보석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보석청구가 없더라도 일정한 경우 재량으로 보석을 할 수 있음

● 양형기준

- 법원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참고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 소속된 양형위원회에서 마련한 기준
- 2009년에 성범죄, 살인, 강도 등 8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이, 2011년에 사기, 절도, 식품·보건 등 8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이, 2012년 7월에 증권·금융 등 4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이 시행되었음
-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의 규정에 따라 법원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하지만 양형기준은 법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음

● 징역

- 일정 기간 동안 교도소에 구금되어 강제노동이 부과되는 형벌
-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의 기간이며 형을 가중할 때에는 50년까지 부과될 수 있음
- 무기징역은 종신형으로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

● 금고

- 일정 기간 동안 교도소에 구금되거나 강제노동이 부과되지 않는 형벌
-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자유형이지만, 노동이 강제적으로 부과되지 않는 점에서 징역형과 차이가 있으며 본인이 희망하면 작업이 부과될 수 있음

● 집행유예

- 피고인에게 자유형을 선고할 때에 그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어 형벌이 집행됨

●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감명령

-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구금하여 자유를 제한하는 대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범죄성향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
- 법원이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뒤에 보호관찰이 개시됨
- 법원은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명령 또는 약물남용치료, 성폭력치료 강의 등을 받게 하는 수감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음
- 보호관찰을 받은 자가 보호관찰을 받지 않거나 법원이 명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음

● 전자발찌 부착명령

-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하는 제도
- 법률이 정하는 범위의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요건을 심사한 뒤에 형벌과 함께 부착명령을 선고함
- 법원은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야간외출 금지, 주거지역의 제한 등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으며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법률이 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신상정보 공개**

- 법원이 일정한 요건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
-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선고된 경우 법원이 명한 기간 동안 관련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상자의 성명, 나이, 주소 등의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됨

● **신상정보 고지**

- 법원이 일정한 요건의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관한 신상정보를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
- 신상정보 고지명령이 선고된 경우 법원이 명한 기간 동안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 중 아동·청소년을 세대원으로 둔 세대와 교육시설의 장애인에게 대상자의 성명, 나이, 주소 등이 기재된 우편물이 발송됨

